

공지사항

'89 일본 국제 전자파 측정기기전 참관 안내

해외교류연구소에서는 오는 '89년 3월 1일 부터 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일본 국제 전자파 측정기기전(EMC JAPAN '89) 참관 및 관련산업시찰을 기획하여 시찰단을 파견한다.

첨단 정밀제품이 선보일 본 전시회를 통해 EMI 관련산업의 세계적인 수준 및 추세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지 관련업체 시찰을 통해 노이즈(EMI/ESD현상)의 측정기술 및 방지 대책 기술과 EMI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선진업체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다음을 참고하여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시 개요

- 전시회명 : EMC JAPAN '89
- 장 소 : Sunshine City Convention Center
Tokyo
- 주 최 : (사) 일본능률협회
- 규 모 : - 참가업체 - 87개사
- Booths - 186
- 참관자수 - 14, 629('88년 보고)
- 동시개최 : Power Supply 국제전시회 및 국제회의
- 전시품목 : 1) EMI/EMP 관련기기 및 부품
2) ESD관련기기 및 부품
3) EMI/EMP측정 및 제어장치
4) 소프트웨어

나. 시찰 개요

- 시찰기간 : 1989년 2월 26일~3월 3일
- 방문도시 : 동경(기타 지역 추가 가능)
- 참가비용 : 87만원(15명 기준)
- 신청마감 : 1989년 1월 14일
- 시찰내용 : 1) 전시회 참관과 해외 정보 및 자료 수집
2) 관련업체 방문 및 간담회
3) 현지 관련산업 실태조사

다. 신청 및 문의처 : 해외교류연구소
(TEL : 733 - 4368)

부품 품질인증업무 지침

제정 : 품운 081 - 14590 (87. 9. 29)

개정 : 품운 0416 - 13340 (88. 11. 14)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부품 품질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공사에서 조달하는 전기통신제품에 사용 가능한 부품의 인증업무는 다른 규정 또는 세칙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대상부품은 공사에서 부품규격화한 부품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외의 용어정의는 품질보증규정과 품질표준서-0103(품질보증 및 신뢰성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 부품규격서 : 개별부품에 대한 요구특성과 성능기준으로 형상, 구조, 치수,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정밀도, 환경조건, 허용오차, 표시 등을 규정한 규격서

2. 부품인증규격서 : 부품의 품질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료발취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판정기준 등을 개별부품단위가 아닌 부품류별로 규정한 규격서

3. 품질인증계획서 : 인증 신청한 부품의 설계, 생산, 시험검사, 포장, 보관 등의 분야에서 품질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절차, 방법 등을 기록한 문서

4. 사후관리 : 인증부품의 지속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인증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제조업체의 품질활동을 관리하는 활동

5. 인증부품 : 이 지침에 의거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인증 유효기간내에 생산된 부품

공지사항

제 4 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식 1]의 인증신청서 1부와 다음 각호중 해당되는 자료(이하 “인증신청자료”라 한다)를 한국 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이하 “품질보증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계획서 1부([별첨1] 참조)
2. 검토용 시료 2개(단, 유니트류의 경우 품질보증단과 협의, 조정 가능)
3. 품질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사유에 대한 보완내역
4. 인증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사유에 대한 조치내역
5. 기타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서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 제출한 자료를 제외 한 추가 또는 변경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인증신청자료의 검토) ① 품질보증단은 접수된 인증신청자료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한다. 다만, 부득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인증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양식2]의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신청인이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의 검토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제 6 조(품질능력평가) ① 품질보증단은 인증신청자료(추가자료 포함)의 검토를 완료한 후 생산현장에서 품질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단은 생산현장에서의 품질능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료에 대한 서류

평가로써 품질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서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품질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은 품질보증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품질능력평가 적합기준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만점의 60%이상으로 한다.

⑤ 품질보증단은 품질능력평가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양식3]의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⑥ 기 인증부품 또는 품질능력평가 적합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품질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인증시험) ① 품질능력평가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품질능력평가 적합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품질보증단 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고 품질보증단이 인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시험을 신청 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은 [양식4]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품질보증단이 인정한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인증시험은 부품규격서 및 부품인증규격서(이하 “부품규격서 등”이라 한다)에 의거 실시한다.

④ 품질보증단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시험 결과를 통보받아 시험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양식5]의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품질능력평가 적합통보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인증시험을 재신청할 수 없으며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시험이 완료된 시료는 인증시험 완료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단, 기간내에 신청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지사항

제 8 조(인증결정) 품질보증단은 품질능력평가와 인증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인증하여 [양식6]의 인증부품목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관련 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제 9 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인증 당시의 제반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당시의 제조업체명, 중요한 원자재, 생산공정, 시험검사방법 및 작업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보증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업체가 통보한 변경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③ 인증업체는 인증부품목록에 등재된 날로부터 2년마다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년도의 등재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성적서는 해당부품의 부품규격서 등에 의거 시험을 실시한 결과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성적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품질보증단은 인증부품의 사용자로부터 인증부품의 불량사항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불량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⑤ 품질보증단은 인증부품에 대한 품질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품질인증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발취하여 부품규격서 등에 의한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체 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 ① 품질보증단은 제9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식7]의 서식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1. 품질인증계획서의 이행상태가 미흡한 경우
2. 제조공정상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험결과 경미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② 품질보증단은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

정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업체로부터 시정내역을 제출받아 조치결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단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정요구를 하거나 부품규격서 등에 의한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체 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단은 제3항의 재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내역을 인증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조치결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정지 및 취소) ① 품질보증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기간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시정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3.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조공정상의 이상으로 중대한 품질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나 시험실시결과 중대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4.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정 내역이나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

② 품질보증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정지를 받은 업체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정지 사유를 조치한 후 조치내역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정지를 해제한다.

③ 품질보증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1. 2년이상 인증부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2. 부품규격서 등이 폐기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정지를 받은 후 6

공지사항

개월 이내에 인증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④ 품질보증단은 인증정지, 인증정지 해제 또는 인증취소 내역을 인증부품목록에 등재하고 해당업체와 관련 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제12조(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의 처리)

①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이 공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절차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당해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기타 필요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지침의 적용상 중요한 기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여비) ① 신청인은 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인증 수수료 및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의 시험비용은 해당 시험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보 칙

제 1 조(부품규격서 등 인정)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정한 부품규격서 등은 공사가 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TDX-1/1A 부품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업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정한 인증유효기간 만료이전까지 구지침에 의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구 지침에 의거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의 사후관리를 받으면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구 지침에 의하여 신

청접수된 것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접수된 것으로 하며, 품질능력평가가 완료된 것은 이 지침에 의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④ 구 지침에 의하여 2개월간의 재신청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잔여기간의 재신청 제한을 해제한다.

[별첨 1]

부품 품질인증계획서의 내용

(*) 표시는 필수 제출자료는 아니나 공사요구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1. 일반 관리분야

가. 조직도

나. 품질관리부서 세부조직도

다. 기술분야(생산, 품질관리 등) 부서 인력현황

라. 교육훈련 현황(*)

2. 장비관리분야

가. 생산장비 목록

나. 시험검사장비 목록

다. 장비관리방법(*)

3. 생산관리분야

가. 원자재 목록

나. 생산 및 시험검사 공정도

다. 제조업체 해당부품 규격서

라. 작업지침서 목록

마. 제품표시, 포장 및 보관저장 방법(*)

4. 품질관리분야

가. 해당부품 시험검사지침서

나. 품질관리방법

다. 시정조치방법(품질문제 보고 및 처리절차)

5. 기 타

가. 사후서비스(A/S) 계획(*)

나. 공장약도

다. 작업라인 배치도(*)

라. 생산능력(해당 부품 및 기타 전기통신부품)

※ 지면 관계상 관련양식은 생략함.



공지사항



新製品 開發 申告 接受 現況

1. (주) 한국마이카(대표자: 이대훈)
Tel : 0417) 4-8401/2, 783-0897/8

한국마이카에서 개발한 Mica Sheet와 Mica Tape는 열전도율이 양호하며 절연성이 뛰어나 발열체의 지지물, 절연 및 아크방지용, 내화전선, 각종

종 모터의 리드線 절연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개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명	Mica Sheet	Mica Tape
규격	(0.15~1.07) × 550 × 1,000/Sheet	(7~25) × (30m, 600m)/Roll
용도	전자렌지, 헤어드라이어, 토스터, 트랜스포머	Fire(Heat) resistant Cable
생산능력	480,000 Sheet (年)	96,000 Roll (年)
개발기간	1986.2~1988.5	
개발비	1억 5,000만원	
개발효과	'88년도 수입대체 1,000,000 \$	1,000,000 \$
	'89년도 " 2,700,000 \$	수출 300,000 \$ 3,000,000 \$

2. 금성산전(주) (대표자: 이희종)
Tel : 787-1114

금성산전에서 개발한 경부선 CTC Software와 수도권 CTC Interface Software는 경부선과 수도권에 CTC(열차집중제어장치)를 도입하여 복잡한 열차수송의 관리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키는

효과로 철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며 주요 개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명	경부선 CTC Software	수도권 CTC Interface Software
개요	경부선 CTC 1차구간(서울-동대구)에 관한 현장상태 및 운전감시, Data를 도출하여 열차운행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현 수도권의 장비들과 VAX컴퓨터의 연결로 현장의 각종 정보를 VAX로 전달, Manual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Control을 VAX컴퓨터가 제어함
시스템 구성	Key Board Process, Tabular Process, Alarm Process, Utility, Data Base Process, Communication Process	DUS 502 System, Seoul Station, Train Describer System, Existing LDP System
개발기간	1988.3~1989.2(12개월)	
개발비	6,250만원	1,966만 2,000원